

	<h2 style="margin: 0;">산학협력단 정관</h2>		규정번호	6-1-1
			제정일자	2004.03.15
			개정일자	2012.04.30
			개정번호	Ver.4
			총페이지	5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설치된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산학협력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법인의 명칭은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사무소 소재지)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45 본 대학 내에 둔다.

제4조(설립 목적 및 업무) ① 산학협력단은 본 대학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 대학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및 이행
2.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
3. 본 대학 교직원의 산학협력 관련 활동 지원 및 그 결과물(지적재산권 포함)의 취득 및 관리
4. 본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(대학내 입주한 기업체, 실험실 공장 및 협력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업무 포함)
5. 보유 기술의 대외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
6. 산업체 재직자 및 취업을 전제로 한 각종 장·단기 기술 교육
7.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

③ 산학협력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대학의 시설 설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. 단, 이 경우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한한다.

제 2 장 조 직

제5조(이사)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.

제6조(단장 및 부단장) ①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총장이 겸하거나 따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단에는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고, 소관 업무를 총괄하되, 총장의 지도, 감독을 받는다.

⑤ 단장의 유고시에는 부단장이 후임 단장 선임시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며, 부단장이 없는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하부조직 및 행정부서) ① 산학협력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,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, 필요한 범위내에서 다음의 기관 또는 조직을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.

1.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<개정 2011.2.1>
2. 산학협력단 내에 설치하는 각종 산업기술개발 관련 연구소
3. 산학협력단 내에 설치하는 각종 국책사업단
4.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기구 또는 조직

②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,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둘 수 있다.

제8조(연구원 등의 채용) ① 산학협력단장은 총장의 승인하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원, 행정직원 및 조교를 임용하여 하부조직 또는 행정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임용조건(임용기간, 보수, 근무조건 등)에 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총장은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 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겸무하게 할 수 있다.

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, 직원 또는 조교로 하여금 본 대학의 교육, 연구 그 밖의 사무를 겸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9조(운영위원회)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.

제 3 장 재산 및 회계

제10조(재산) 산학협력단은 다음의 각 호를 기본 재산으로 한다.

1. 출연 재산
2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 또는 출연 재산

제11조(수입)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
3.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
4.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
5. 타 대학이나 산업체 등이 활용하는 산학협력단 소유의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사용료 수입
6. 이자수입 등

제12조(지출) ① 산학협력단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.

1. 산학협력단의 관리 운영비
2. 산학협력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비
3. 대학의 시설 운영 지원비
4.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·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
5.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
6.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학협력 사업 관련 경비

② 제1항 제4호에 관해서는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13조(회계)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의 회계연도와 같다.

② 산학협력단에 소관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하되, 재원 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따로 계정을 둘 수 있다.

③ 단장은 사업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법령이 정하는 결산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총장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에 이를 심의·확정하여야 한다.

④ 본 대학 총장은 대학 내부 또는 외부인을 지정하여 산학협력단의 재정 상황 및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.

제14조(재무관리의 제한)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1. 기본 재산의 양도, 증여, 임대, 교환, 포기
2. 예산외 채무의 부담
3. 채권의 포기

제 4 장 보 칙

제15조(비밀유지의무) 본 정관에서 규정한 직제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 특히, 산학협력사업에 관련하여 취득한 당해 산업체

의 경영 또는 기술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, 본인의 신분상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6조(정관의 변경) 총장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단장의 건의에 의하여 본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7조(해산)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에 규정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.

②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.

③ 해산시의 잔여 재산은 당해 대학의 교비회계에 편입한다.

④ 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.

제18조(공고)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.

1. 각종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고 사항

2. 변경 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

3. 각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

② 공고는 일간신문을 통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,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본 대학신문, 본 대학 또는 본대학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정관은 법인 등기일과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.

(2)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본 대학과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·의무는 본 대학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.

(3) 본 대학 산학협력단이 설립 당시 본 대학이 확보하고 있는 제11조 각 호 관련 수입을 산학협력단에 출연한다.

(4) 본 대학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산학협력단으로 출연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정관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